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는? (3)

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하여 년간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단, 구조안전점검 외의 정기점검인 경우이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 · 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가? (3)

5.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5만배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경우 2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10인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6.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기준은? (2)

7.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할로겐화합물 방사능력 : 40kg/s 이상